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나.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별표11)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서류를 갖추어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2. 운항기간 : 7일 이내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운항)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임시운항이 종료된 경우
2. 임시운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가목 및 나목의 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	20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	10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20	30
마.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호	20		
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의2호	20		
사.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		
아.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		
자.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		
차.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2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15	20

카.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3호	20
타.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8호	50
파.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4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5호	20
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6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너.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	30만원
더.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9호	50
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8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0호	50
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2	100

서.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3	100	
어.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4	휴업·폐업 미신고 10	재개업 미신고 100
저.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1호	30	
처.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2	1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3	30	
터. 법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2호	60	
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3호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u> <u>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u> <u>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항하</u> <u>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면인 경</u> <u>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u> <u>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u> <u>“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u> <u>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u> <u>정하는 장비 및 서류를 갖추어</u> <u>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u> <u>다)를 신청해야 한다.</u> <u>②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은</u> <u>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u> <u>해야 한다.</u> <u>1.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u> <u>0해리 이내</u> <u>2. 운항기간 : 7일 이내 (해뜨기</u> <u>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u> <u>지의 범위 내에서 운항)</u> <u>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일</u> <u>이내에 발급받은 관서의 장에게</u> <u>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u>

한다.

1. 임시운항이 종료된 경우

2. 임시운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1